

# BNK증권플러스통장 연계 증권거래 서비스 약관

#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고객이 실명확인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부산은행(이하 "은행" 이라 한다)을 통해 개설한 'BNK증권플러스통장'(이하 "은행계좌"라 한다)을 보유한 고객이 은행계좌와 연계하여 (주)BNK투자증권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"증권계좌"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을 하고 실명확인을 받은 후 개설된 회사의 위탁계좌를 말한다.
- ② "계좌비밀번호"는 고객이 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직접 설정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의 고객지원센터 및 영업점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주문, 이체 등 각종 업무처리 시 사용된다.
- ③ "접속비밀번호"는 고객이 당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 등록 시 직접 설정하는 비밀번호로 시스템 접속시 사용된다.

## 제3조(증권계좌의 등록 등)

- ①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은행계좌와 연계하여 증권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된다.
-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, 종합계좌약관, 홈트레이딩서비스약관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은 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, 채권등의 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.
- ④ 증권계좌개설시 회사는 별도의 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며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이 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한다.

## 제4조(비밀번호의 관리)

- ① 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 모든 비밀번호는 회사에 최종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 하여야 한다.
- ②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영업점방문 및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. 단, 접속비밀번호변경은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.
- ③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좌비밀번호 및 접속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TP와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변경처리 가능하다.
- ④ 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모든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### 제5조(위탁증거금의 징수 및 자금관리)

- ① 고객의 예탁금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은행이 관리하며 위탁증거금, 위탁매매결제대금, 배당 등과 관련한 제세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,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의 은행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출금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② 고객의 은행계좌에 압류 및 그 밖의 출금제한 사유로 인해 매수결제일 결제대금 부족 시 회사는 해당 증권계좌 또는 회사내 고객의 타 증권계좌의 현금으로 변제충당 할 수 있다.
- ③ 위탁매매결제대금 및 권리금 등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, 해당 지급일날 고객의 은행계좌로 즉시 자동 입금처리 된다.

### 제6조(입출고)

- ① 회사의 증권계좌내 위탁증권을 다른 금융투자회사로 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또는 HTS를 통한 신청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.
- ② 회사에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회사는 당해 증권을 출고 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한다.

### 제7조(정보변경 및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)

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방문, 고객지원센터등을 이용하여 실명확인번호, 계좌명, 계좌번호, 비밀번호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및 회사에 등록된 각종 고객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.

### 제8조(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)

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및 상품거래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한다. 단, 제공된 개인정보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.

### 제9조(계좌의 해지 등)

- ① 증권계좌의 해지는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이나 회사의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며, 증권계좌가 해지 되더라도 은행계좌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.
- ② 고객이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이와 연계된 회사의 증권계좌를 자동으로 해지처리 한다. 단, 해당 증권계좌에 잔여 예탁 자산이 있거나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권리/의무사항이 남아있는 경우 해지처리가 불가능하며,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고객의 별도 해지신청에 의거하여 해지처리가 가능하다.

### 제10조(약관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

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 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**제11조(분쟁조정)**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(기타)**

① 예탁증권담보유자, 신용거래, 은행이체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는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‘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’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